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15200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길  
변 론 종 결 2021. 11. 17.  
판 결 선 고 2022. 1.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B 및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1.경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38,721,88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721,8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4. 8. “981,208,252원 및 그 중 980,913,561원에 대하여 2010. 9. 17.부터 2010. 12.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8595)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의 부친인 D는 2019. 2. 21. 사망하여 자녀인 B, C 및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D가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21.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9. 4.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한편 D의 사망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7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80,000,000원에서 사해행위 후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3,834,343원을 공제한 116,165,657원 중 B의 상속지분 3분의 1 해당액인 38,721,885원의 범위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3. 판단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0. D의 처인 F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32,000,000원이었는데, 그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가 50,000,000원을 D에게 송금함과 아울러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명의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6. 20.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E 앞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D와 F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2017. 5. 25. F가 사망하자 2017. 8.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D의 생전에 D에게 매월 수십만 원 정도의 용돈도 지급하여 온 사실, D가 2019. 2. 21.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B, C와 피고는 2019. 4. 12.경 피상속인인 D의 재산 취득과 유지 및 부양에 위와 같이 특별히 기여한 피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채무를 피고가 변제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기여분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9. 4. 17. 위 근저당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2019.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기여분으로 피고에게 전부 귀속되었고 채무자 B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기여분 협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종영

## 별지목록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H에 있는

I아파트 J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K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L

구 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면 적 : 42.240㎡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 대 4234㎡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 대 10632㎡

대지권의 종류 :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14866분의 20.519

(이상 현 소유자 A,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관할)

